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29호 2010. 11. 3.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223호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조례 제2224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정선군조례 제2225호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 조례…… 4
○ 정선군조례 제2226호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8
○ 정선군조례 제2227호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정선군조례 제2228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68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6
○ 정선군규칙 제1169호 정선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7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0-152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28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0-602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0
○ 정선군공고 제2010-603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37
○ 정선군공고 제2010-60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48
○ 정선군공고 제2010-607호 2010년 산림병해충 임업적방제(위생간벌)사업 공고…… 50
○ 정선군공고 제2010-609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51
○ 정선군공고 제2010-614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2
○ 정선군공고 제2010-623호 국도59호선 정선유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공시송달공고…… 56
○ 정선군공고 제2010-624호 154kV 영월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57
○ 정선군공고 제2010-62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입안·열람공고…… 58
○ 정선군공고 제2010-632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6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제 229 호 정 선 군 보 2010. 11. 3. (수요일)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11. 3.

정선군조례 제2223호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불금 및 부당 이득금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9.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10.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개 정 이 유

○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다음 각 호를 추가함(안 제3조)
- 의료급여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 의료급여법에 따른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11. 3.

정선군조례 제2224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20%를 초과하는 단일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를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정선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재정 투자규모를 확충하고자 관련조항의 일부를 개정함

주 요 내 용

○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상향 조정

-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 범위 내 ⇒ 15% 범위 내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11. 3.

정선군조례 제2225호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동강의 아름다운 비경을 고공에서 조망할 수 있는 스릴형 이색 관광시설인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 워크 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란 만7세 이상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 이란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 및 의무경찰·전투경찰을 말한다.
4. “성인” 이란 만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입장료” 란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 워크 전망대(이하 “전망대” 라 한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전망대는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200번지에 둔다.

제4조(시설) 전망대에 포함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전망대
2. 판매시설
3. 매표시설
4.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입장료 등) ①전망대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망대의 운영시간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입장한 자에 한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입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는 전망대에 입장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전망대 입장권의 효력은 당일 1회에 한한다.

제6조(입장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65세 이상인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자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전망대 편의시설물을 운영하는 자 및 그 종업원
7. 기타 군수가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정선군민(정선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군인의 경우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8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망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이 있는 자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자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망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전망대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망대의 손괴, 파손 등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2. 토석, 수목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취사 등의 행위

4. 기타 군수가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 전망대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망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망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전망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①군수는 전망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의 임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5.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관리·운영

[별표 1]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일 반			군 민			비 고
	성 인	청소년	어린이	성 인	청소년	어린이	
입장료	2,000	1,500	1,000	1,000	800	500	

제 정 이 유

○ 이색 관광체험 시설인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의 개장에 대비하여 입장료 기준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전망대의 입장료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한 기준 명시(안 제5조)

○ 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기준 명시(안 제7조)

○ 전망대 위탁관리 기준 명시(안 제11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11. 3.

정선군조례 제2226호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새비재 일원에 소중한 추억 및 약속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정선군 타임캡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타임캡슐”이란 사진, 편지 등 추억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정선군에서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제작한 타원형 용기를 말한다.
2. “이용료”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타임캡슐을 약정된 기간동안 보관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약정기간은 100일, 1년, 2년, 3년으로 구분한다.

제3조(위치) 타임캡슐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 70-13번지에 둔다.

제4조(시설) 공원에 포함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매립형 타임캡슐 보관시설
2. 관리동 및 화장실
3. 전망데크
4.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

제5조(이용료 등) ①매일 9시 이후부터 18시 이전에 공원에 입장하여 타임캡슐을 보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용료는 공원에 입장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이용권의 효력은 타임캡슐 1개당 1회에 한한다.

제6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유효기간 등) ①보관 중인 타임캡슐의 유효기간은 약정기간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0일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②타임캡슐의 개봉 및 내용물의 회수는 이용자(최초 신청자를 말한다)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당시 동행인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정신병자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자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군수는 동절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 귀금속, 귀중품 등을 타임캡슐 내에 투입하는 행위
2. 공원 및 기타 시설물을 손괴, 파손하는 행위
3. 토석, 수목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4. 공원 내 취사행위
5. 기타 군수가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 ①이용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캡슐 내 보관물이 파손 및 분실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②공원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정선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①군수는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의 임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6.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관리·운영

[별표 1]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100일	1년	2년	3년	비 고
타임캡슐 구입	40,000	50,000	60,000	70,000	
타임캡슐 대여	10,000	20,000	30,000	40,000	

제 정 이 유

○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모티브로, 신동읍 새비재 일원에 조성 중인 타임캡슐공원의 개장에 대비하여 이용료 기준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타임캡슐 이용료 기준 명시(안 제5조)

○ 타임캡슐 보관에 따른 유효기간 명시(안 제7조)

○ 타임캡슐공원 내 시설 등의 위탁관리 기준 명시(안 제11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11. 3.

정선군조례 제2227호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재래시장 또는 시장 내 건축하는 건축물
3. 군사시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5.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대상건축물란 중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을 각각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개 정 이 유

○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나는 건축물 대지의 조경 등에 관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조례 위임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대지안에 조경등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 확대(안 제12조)

-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재래시장 또는 시장 내 건축하는 건축물
- 군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11. 3.

정선군조례 제2228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 업무 및”을 “관리 업무 중”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소규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는 지원년도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시급히 보수하지 아니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2. 시급히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3. 기타 입주자의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거 외의 시설

제7조제2항제2호 중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내역서 포함)”을 “(총사업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포함)”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포함)”을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착수신고서
2. 설계도서(내역서 및 도면)
3.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제9조제2항 후단 중 “상반기 6월 15일, 하반기 12월 15일”을 “상반기 7월 15일, 하반기 익년 1월 15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개정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해당 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개 정 이 유

○ 공동주택 지원대상으로 소규모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상 필요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 중 소규모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안 제6조제4항)

○ 착수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설계도서를 추가 규정(안 제8조)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11. 3.

정선군규칙 제1168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조의3제1항제3호의 신설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개정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간 적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서면조사서(제9조의2 관련)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정 선 군 수 귀하

(297㎜×210㎜)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정선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우편번호 : 233-800

※ 문의사항 전화 : (033) 560-228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목 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재산분) 신고 명세서
3.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명세서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소재지	강원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단위 : 원)

구분 월별	① 소득세 납부액								②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210㎜)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176조의11(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제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 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176조의12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주민세(재산분) 신고 명세서(정선군 소재 사업장)

(단위 : ㎡, 원)

사업 년도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소 계 (ⓑ)	구내 식당	기타	기숙사					

(297㎜×210㎜)

※ 서식 2. 주민세(재산분) 신고 명세서(정선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명세서(정선군 소재 사업장)

<사업년도 : ,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5/1,0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서식 3.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명세서(정선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

개 정 이 유

○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세무조사 면제대상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추가 신설(안 제9조의3)

○ 면제기간을 3년간으로 한정(안 부칙 제2조)

정선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11. 3.

정선군규칙 제1169호

정선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를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7월15일,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수료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자의 시간절약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지급시기를 단축하고자 관련조항을 정비함

주 요 내 용

○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기 조정(안 제2조)
- 연 2회(반기별) ⇒ 연 1회

정선군고시 제2010-152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통제기간 : 2010. 11. 1 ~ 2010. 12. 15
   ※ 산불조심 기간 중 전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현황
   가.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구 분	관내 민유림(ha)	입산통제구역(ha)
	38,198	12,768

나. 등산로 개방·폐쇄구역 지정현황

구분	합계		개방		폐쇄	
	노선수	거리(km)	노선수	거리(km)	노선수	거리(km)
	30	113.4	10	44.2	20	69.2

3. 기타사항
   가. 산불조심 기간 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입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므로 입산신고를 하지 않고 입산 할 수 있습니다.

2010. 10. 28.

정 선 군 수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1부(홈페이지 참조).
2) 등산로 개방·폐쇄 지정·고시 내역 1부. 끝.

2010년 등산로 개방·폐쇄 구분내역

소재지			등산로			개폐여부	비 고
읍면	리	산 명 (등산로명)	노선번호	구 간	총거리 (km)		
합계		15개산	30개노선		113.4		
정선읍	북실리	조양산	01	성불사입구-정상-신월리	5.8	개방	
정선읍	애산리	조양산	01-01	주노선-진성주유소	1.2	개방	
정선읍	애산리	조양산	01-02	진성주유소-주노선	1.4	개방	
정선읍	애산리	조양산	01-03	진성주유소-주노선	1.1	개방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01	아리랑아파트뒤-정상-귤암리입구	5.3	폐쇄	
정선읍	봉양리	비봉산	01	정선경찰서후문-정상	2.2	개방	
고한읍	고한리	함백산	01	만항재-정상-적조암입구	10.1	개방	
고한읍	고한리	못골	01	못골아파트-은대봉	3.0	폐쇄	
사북읍	직전리	노목산	01	폐기물중간처리장-정상	2.9	폐쇄	
사북읍	사북리	노목산	01-01	강원랜드세탁공장-주노선	2.6	폐쇄	
사북읍	사북리	노목산	02	노른가리-정상	3.6	폐쇄	
사북읍	사북리	노목산	03	노나무재-정상	2.3	폐쇄	
화암면	백전리	노목산	03-01	노나무골-주노선	2.1	폐쇄	
화암면	백전리	노목산	03-02	서원기-주노선	4.3	폐쇄	
신동읍	덕천리	백운산	01	점재마을-정상-제장마을	6.7	개방	
화암면	화암리	몰운대	01	화암약수-정상-몰운리	5.4	폐쇄	
화암면	화암리	각희산	01	화암동굴입구-정상-벌문재	6.2	폐쇄	
화암면	화암리	각희산	01-01	문재-주노선	1.1	폐쇄	
화암면	화암리	각희산	01-02	화표동입구-주노선	2.6	폐쇄	
화암면	몰운리	지억산	01	아랫제동입구-정상	3.5	폐쇄	
화암면	몰운리	지억산	01-01	주노선-정상	4.9	폐쇄	
남면	유평리	민둥산	01	증산초교-정상-불암사	10.1	개방	
남면	유평리	민둥산	01-01	주노선-고병골	2.3	개방	
남면	무릉리	민둥산	01-02	능전-정상	3.3	개방	
남면	문곡리	벽암산	01	용궁낚시터-정상	1.5	폐쇄	
남면	낙동리	백이산	01	개미마을-정상	2.8	폐쇄	
남면	광덕리	백이산	02	역밭-정상	3.6	폐쇄	
북평면	문곡리	상정바위	01	문곡다리주차장-정상-고양리노인정	6.7	폐쇄	
북평면	문곡리	상정바위	01-01	주노선-놀탑-주노선	1.5	폐쇄	
임계면	봉산리	장찬성	01	봉산1리-정상-송계솔밭	3.3	폐쇄	

정선군공고 제2010-602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0. 21.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군민 수요 중심의 군정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행정기구를 분리, 신설하고 기능이 쇠퇴한 행정 기구를 폐지하는 한편 관련 규정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행정기구 명칭 변경(안 제3조)

○ 부서폐지 : 녹색정책과, 환경산림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 부서신설 : 녹색환경과, 산림정책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 명칭변경 : 주민생활지원실 ⇒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정책과
⇒ 농업축산과, 산업경제과 ⇒ 지역경제과

나. 부서별 사무조정(안 제3조 제2항)

○ 녹색정책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자치단체의 역할담당,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기타 지방분권 업무 총괄, 군정전략과제 개발사업□□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기후변화 대응사무 전반□□은 녹색환경과로 이관하며,□□연료·전기에 관한사항□□은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리 업무, 자전거이용 활성화대책□□은 도시건축과로 이관함.

○ 환경산림과 사무중□□환경부문□□업무 전반을 녹색환경과로 이관

○ 환경산림과 사무중□□산림부문□□업무 전반을 산림정책과로 이관

○ 건설도시과 사무중□□도로 및 교량관리, 건설행정에 관한사항□ 업무전반을 건설방재과로 이관

○ 건설도시과 사무중□□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차량관리·도시,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업무전반을 도시건축과로 이관

○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중□□민방위, 충무계획, 을지연습, 공익근무 요원관리□□업무 전반을 자치행정과로 이관

○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중□□재난관리, 재해예방, 하천관리□□업무전반을 건설방재과로 이관

다. 읍·면 및 출장소 사무조정(안 제11조, 안 제15조)

○ 제11조중□□호적□□을□□가족관계등록사무□□로 수정

○ 제15조제1호중□□병사□□를 삭제하고, 제2호중□□호적□□을□□가족관계등록사무□□로 수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녹색정책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녹색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관광문화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장의”를 “실·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행정심판, 국가배상, 법제 및 소송업무” 다음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 기타 지방분권 업무총괄
○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제3조제2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로 하고, “혁신분권,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다음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지역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민방위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관리
○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동원
○ 충무계획 수립 및 정부연습계획(을지연습) 실시
○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

제3조제2항제3호의3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세무회계과장”을 “세무회계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사무”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환경산림과장”을 “녹색환경과”로 하고, “쓰레기위생매립장 운영관리”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사무 전반”을 신설하며, “산림이용구분 조사 및 장기계획 수립 시행, 산림경영계획 작성 운영 및 육림·산림보육 관리지도, 임산물 생산수급 및 반출관리, 산불 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산지정화 및 산림내 불법건조물 단속”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기타 환경보호와 산림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타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7호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1. 산림정책과

○ 산림이용구분 조사 및 장기계획 수립 시행
○ 산림경영계획 작성 운영 및 육림·산림보육 관리지도
○ 임산물 생산수급 및 반출관리
○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 산지정화 및 산림내 불법건조물 단속
○ 기타 산림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8호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문화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중 “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로 하고,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민자유치” 다음에 “연료·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같은 호 중 “그 밖의 산업경제에 관한 사항”을 “그 밖의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방재과”로 하고, “군 도시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 도시 계획 수립 및 집행,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보상, 건축허가 및 건축사, 건축업자 지도단속,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택지조성 및 주택자금 관리, 운수사업의 지도 감독,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 주차장 허가 및 불법주정차 단속,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며,

"위험교량 유지관리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다음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재난관리 및 방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수해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시행
○ 각종 재난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 하천의 이용, 보존관리, 감시
○ 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기성제 유지관리

제3조제2항제10호 중 "그 밖의 건설, 도시,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을 "그 밖의 건설, 재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도시건축과
○ 군 도시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
○ 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
○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보상
○ 건축허가 및 건축사, 건축업자 지도단속
○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택지조성 및 주택자금 관리
○ 운수사업의 지도 감독
○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
○ 주차장 허가 및 불법주정차 단속
○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리 사무
○ 자전거이용 활성화대책
○ 그 밖의 도시,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사무"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병사, 민방위"를 "민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사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정선군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하며, “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⑥「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⑦「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⑧「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⑨「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⑩「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⑪「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⑫「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농업정책과장□□을□□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⑬「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환경산림과장”을,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

며, “건설도시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⑭「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환경산림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⑮「푸른정선21실천협의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산림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⑯「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8조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⑰「정선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⑱「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제26조제3항 중 “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⑲「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⑳「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21)「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22)「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한다.

(23)「정선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24)「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25)「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정선군공고 제2010-603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0. 21.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가. 군민 수요 중심의 군정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서 신설 및 부서장 직렬 조정
○ 녹색환경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 산림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건설방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도시건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보건소장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나. 부서의 명칭 변경
○ 주민생활지원실 →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정책과 → 농업축산과, 산업경제과 → 지역경제과, 연구기술담당관 → 기술지원과

다. 사무의 조정
○ 기획감사실에 “지방분권시책추진”, “균형발전 시책 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추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를 추가로 분장함.
○ 자치행정과에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중 민방위 관련 업무 전반을 추가로 분장함.
○ 녹색정책과 사무중 “지방분권시책추진”, “균형발전 시책 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추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업무를

기획감사실에 이관하고,□□석유판매업 허가 및 관리□□, “가스업체 허가 및 관리□□, “연탄제조업 관리”, “에너지 관리”, “전기 및 전화사업 관리”,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업무를 지역경제과에 이관하며,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관리”, “도시경관조성 사업”,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및 평가□□업무를 도시건축과로 이관함.

○ 환경산림과 사무중 환경관련 업무전반은 녹색환경과에 이관하고, 산림관련 업무 전반은 산림정책과로 이관

○ 지역경제과에 산업경제과 업무중□□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는 도시건축과에 이관하고, 그 외 업무 전반을 흡수하며, 녹색정책과 사무중□□석유판매업 허가 및 관리”, “가스업체 허가 및 관리”, “연탄제조업 관리”, “에너지 관리”, “전기 및 전화사업 관리”,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업무를 추가로 분장함.

○ 건설도시과 사무중 건설관련 업무전반을 건설방재과에 이관하고, 도시·건축·교통업무 전반을 도시건축과에 이관함.

○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중 재난·재해 및 하천관련업무 전반을 건설 방재과에 이관하고, 민방위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함.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 임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실장·과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세무회계과장·관광문화과장·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건설방재과장·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에 제71호부터 제7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 지방분권 시책추진
72. 균형발전 시책추진
73.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74.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추진
75.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제5조의 제목□□(주민생활지원실)□□을□□(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각호외의 부분 중□□주민생활지원실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에 제98호부터 제1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8. 민방위대 운영계획 및 전시 민방위계획 수립
99. 민방위대편성 및 동원 운영
100. 민방위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101. 민방위운영협의회 운영
102. 민방위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103. 민방위 시설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104. 주민신고망 운영 및 정비
105.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
106. 충무계획 수립 및 도 승인
107. 정부연습계획(을지연습) 수립 및 실시

108.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109. 직장민방위대 편성 운영
110.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인도인접, 복무관리

제6조의3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환경산림과)□□를□□(녹색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환경산림과장□□을□□녹색환경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1호부터 제1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농업정책과)□□를□□(농업축산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농업정책과장□□을□□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림사업 계획 및 실행
2. 숲 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3. 조림지사후 관리(풀베기, 치수가꾸기, 덩굴제거)
4. 임업분야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5. 산림기본통계조사
6. 도시녹화, 조경관련업무 설계 및 사후 관리
7. 가로수조성 관리 및 지도
8. 특용수 보급 및 사후관리
9. 산림경영계획 운영 및 실행
10. 임목벌채 허가(신고)
11. 목재생산수급조절 및 유통구조개선
12.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13. 사방사업(사방댐, 야계, 예방, 산지 사방)실행
14. 산림재난관리(산사태예방 업무)
15. 산업비림 및 지상권해제 지도
16. 임업진흥촉진지역 관리
17. 산림입지조사
18. 양묘장시업 및 지도관리
19. 종묘판매업 등록 업무 및 지도관리
20. 채종림 사후관리

21. 산별 시범단지조성
22. 5대강유역 산림관리
23. 시업제한림 관리(보안림, 사방지 정지)
24. 산불방지대책 추진
25. 산림병해충방제(솔잎혹파리 및 일반해충)
26. 사법실무(「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계법)
27. 산림형질 변경 허가 및 사후관리(신고, 협의)
28. 토사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29. 채석허가 및 사후관리
30. 수목굴·채취허가(신고) 및 복구
31. 기타산림 복구사업(폐탄광 산림복구 등)
32.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관리
33. 희귀수목 보호관리(주목 군락지 실태조사 등)
34. 화전정리지 사후관리
35. 산지정화 사업추진
36. 산불방지공익근무요원 관리
37. 임산물 반출 관리
38. 산림내 불법건조물 정비단속
39. 산림의 이용구분 조사
40. 보전임지 관리
41. 군유림 관리 및 경영사업 실행
42. 산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실행
43. 산림융자금 관리
44.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관리조성
45. 임업기술지도
46. 임업단체 육성지도
47. 백두대간 보호업무
48. 산림복합 경영
49.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제12조의 제목□□(산업경제과)□□를□□(지역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산업경제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0호부터 제6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석유판매업 허가 및 관리

61. 가스업체 허가 및 관리
62. 연탄제조업 관리
63. 에너지 관리
64. 전기 및 전화사업 관리
65.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도설치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2. 도로점용허가
3. 도로굴착 승인 및 심의회 운영
4. 전문건설업 관리
5.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6. 접도구역 관리
7. 군도·농어촌도로 과적차량 단속 및 계획수립
8. 지방도 보상 및 등기
9. 건설기계 및 조종사 관리
10. 국유재산 관리(건설교통부 소관중 도로 3,500필지)
11.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
12. 국가 기준점 관리(기준점, 수준점, 삼각점등)
13. 군도 수로원 관리
14. 위험시설물 관리(도로시설물) 및 낙석위험지구 관리
15. 도로 표지판 설치 및 반사경 설치
16. 도로설해대책
17.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실시
18. 철길건널목 관리
19. 교통사고 많은지역 개선 및 관리
20. 도로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
21.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22. 군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23. 군도 및 농촌도로상 교량의 신설 보수
24. 농촌도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25.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26. 위험교량 유지관리
27. 군도 보상 및 등기

28. 기타 건설방재과 소관 토목사업
29. 교통소통대책 사업
30. 도로 유지관리 사업
31. 방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2. 재해위험지구 조사 및 관리
33. 재해대책본부 운영
34.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
35. 수해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36. 설해대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7. 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 시행
38. 지역재난관리계획 수립
39. 지역재난대비자원동원계획 수립
40.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 관리
41.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장단기계획 수립
42.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43. 지역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일상·정기·수시점검)
44. 지역재난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활동
45. 재난연감 작성 및 통계분석
46.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47.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48. 재난무선통신 운용 및 관리
49.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
50.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51. 정선군재난종합상황실 운영
52. 지역긴급구조구난본부 운영
53. 국가기반 재난업무
54.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 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55. 재해복구 인력·장비 운영 관리
56. 재해피해복구 대주민 홍보
57. 상황별 재난대피시설 지정 협조 및 관리
58. 자원봉사단체 인력협조 및 관리
59. 유관기관 및 중앙·도·자치단체간 복구지원 협조체제 구축
60. 기타 각종재해 및 재난에 관한 사항
61. 하천골재 및 육상골재 인·허가
62. 골재 선별·파쇄업 인·허가

63. 지방·준용하천 인·허가 및 관리
64. 공유수면 인·허가 및 관리
65. 소하천 인·허가 및 관리
66. 양어장등 유수인용 허가
67.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 및 협의
68. 하천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69. 준용하천 개수사업
70. 기성제 정비 및 유지관리
71. 하천편입토지 보상 및 폐천부지 관리
72. 유·도선관리 및 하천 내 각종시설물 유지관리
73. 국소관(건교부) 재산 중 하천·구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
74. 하천관리실태 점검 및 하천관리 주요민원 처리
75. 하천대장 관리 및 기타 수자원관리상 필요한 사항
76. 댐 관련 업무 추진
7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시설물 관리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입안결정 및 지적고시
2.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3. 도시계획사업 추진
4. 도시계획사업 편입용지 및 미불용지 보상, 소유권이전(측량등기)
5. 도시계획시설 관리
6. 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 물건 적치허가
7. 택지조성 사업
8. 도시공원(시설녹지포함) 점·사용허가
9. 토지형질변경 허가
10. 각종 도시계획 통계작성
11. 소도읍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2. 자전거도로 시설 및 관리
13. 주택행정 건실화대책 추진
1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5. 주택조합 설립인가

16. 국민 및 민영주택 분양승인
17. 주택건설 감리자 지정
18. 공동주택 관리 및 계절별 안전점검
19. 건물동원자원 관리
20.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
21. 건축허가 및 협의
22. 건축조례운영관리
23.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관리
24. 표준설계도서 운영관리
25.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철거(계고장 발급, 행정대집행)
26. 각종건축 진정민원 처리
27. 건축사, 주택건설 사업자 관리
28.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29.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0. 농촌공가철거 및 농촌빈집정보센타 운영
31. 농촌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32. 패키지마을 기반시설 사업추진
33. 패키지마을 농촌소규모오수처리시설 설치
34. 농촌소규모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
35. 재해주택 복구
36. 국민주택융자금 징수 및 상환
37. 국민융자주택 지번정정 및 소유권 이전
38. 융자금 체납자 개인별카드 관리
39.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40. 운수사업 인·면허 및 등록업무
41.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42.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43. 주차장 관리 업무 및 특별회계 운영
44. 자동차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
45. 중기등록
46. 책임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47. 수송동원에 관한 사항
48. 교통량 조사
49. 자동차 운송알선·대여사업 등록
50. 자동차 운수사업 약관인가 및 개선명령

51. 자동차 운수사업 운행시간, 운임, 요금인가 신고에 관한 사항
52.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관리
53. 창고업 등록 및 지도감독
54. 계절별 특별수송대책
55. 공영버스운행 관리
56. 운수업체 및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57. 과징금 부과 징수
58. 교통불편 신고 처리
59. 자동차 정비업·폐차업·매매업의 지도감독
60.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상자 지정 및 지도감독
61. 철도관련 업무
62. 기타 교통운수 행정에 관한 업무
63. 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
6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65. 건축물대장 관리
66.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67.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관리
68. 도시경관조성 사업
69.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70.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71.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및 평가
72.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제15조제1항 중□□지방보건사무관□□을□□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연구기술담당관□□을 각각□□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산림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②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환경산림과장”을 “산림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환경산림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하며, “연구기술담당관”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⑤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⑥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라목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업기술과장(기술개발담당)”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촌지도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경영기획담당”을 “지도기획담당”으로 한다.

정선군공고 제2010-60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0. 21.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총정원 : 564명 (현행과 같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 본 청 : 266명(증2)
○ 의 회 : 11명(현행과 같음)
○ 직속기관 : 86명(현행과 같음)
○ 사 업 소 : 24명(△3)
○ 읍 면 : 177명(증1)

다. 직렬별 정원 조정

① 행정·환경 5급 증1명 ↔ 행정5급 △1명
② 행정·녹지5급 증1명 ↔ 행정·녹지·환경5급 △1명
③ 의무·보건·간호4~5급 증1명 ↔ 의무·보건4~5급 △1명
④ 의무·보건·의료기술5급 증1명 ↔ 의무·보건·간호5급 △1명
⑤ 행정·녹지6급 증1 ↔ 행정6급 △1명
⑥ 행정·농업6급 증1 ↔ 행정6급 △1명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 임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10-607호

공 고

2010년도 산림병해충 임업적방제(위생간벌)사업을 실행하고자 사업추진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후 우리군에서 방제사업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2010년 산림병해충 임업적방제(위생간벌)사업
2. 사업기간 : 2010. 11. ~ 12.
3. 사업내용 : 소나무 임지 위생간벌 및 하층식생정리
4. 공고기간 : 2010. 10. 20 ~ 2010. 11. 8(20일간)
5. 기타사항
 -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산림병해충 임업적방제(위생간벌)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자에게 대행하여 실행함.
 - 본 공고에 이의가있을 경우 공고기간내에 우리군 환경산림과로 전화(033-560-2167)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 바랍니다.
6. 사업대상지 내역 : 붙임 참조

붙 임 : 산림병해충 임업적방제(위생간벌)사업 대상지 1부(홈페이지 참조).

2010. 10. 20.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10-609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및 2010.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10. 20.

정 선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0. 10. 20. ~ 11. 03(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강원도 정선군 환경산림과(☎ 033-560-2347)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 내역 1부(홈페이지 참조)

정선군공고 제2010-614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0. 21.

정 선 군 수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일 2010.09.17)됨에 따라

나. 이를 반영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 통일기준 확대(12종 추가)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가 현행 15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되어, 추가 12종의 통일기준을 반영하여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수수료 금액 조정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정선군 제증명 수수료는 가감 없이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

다.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제출시(1,000만원 이상)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

○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 또는 견적제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자신의 행정사무처리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관련)

종류	금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	1건당 800원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수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수수료(누락사항 반영)	1건당 10,000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정선군수 (참조 :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233-804),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033-560-2282(전화), 033-560-2587(팩스)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증명> 제8호의 공장등록증명란 중 “1통” 을 “1건” 으로 한다.

별표1 <증명> 제10호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컬러출력 또는 도면첨부” 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컬러출력” 으로 한다.

별표1 <증명> 제15호 중 화재증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화재증명원	1건	800원	

별표1 <증명> 제15호에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란 및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1호 공유재산 대부신청란 중 “계속” 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 으로 하고, 같은 호에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2호 중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원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3호 중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란 및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	1건	1,000원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4호 중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란 및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교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원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7호 중 “체육시설업신고, 변경신고”를 “체육시설업 신고”로 하고, 같은 호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10호 회계관계란 중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시(1,000만원 이상) 1건 10,000원”을 “삭제 한다.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11호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란 중 “1,0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10-6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원주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국도59호 정선유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정본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0. 10. .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국도59호선 정선유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재결서정본 공시송달대상

번호	성 명	주 소	비 고
1	고재옥	강원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399-1	
2	신성묵	강원 원주시 반곡동 287	관계인

4. 공고기간 : 2010. 10. 26 ~ 2010. 11. 09(15일간)

5.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강원도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488)

6. 기타사항

가. 원주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국도59호서누정선 유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2010. 09. 2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군공고 제2010-624호

154kV 영월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견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10. 10. .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전원개발사업(154kV 영월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3. 사업시행지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221번지 일원
4.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단위 : ㎡, 원)

수 용 토 지 내 역					토지소유자		비 고 (관계인)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221	임	60,617	2,513	최종태	경북 영주시 영주동 291-22	
"	산221-6	임	23,883	876	서경섭	경북 영주시 휴천동 1777 남산현대아파트 206-1807	서정섭

4. 공고기간 : 2010. 10. 27 ~ 2010. 11. 09 (15일간)
5. 열람장소 : 정선군청 녹색정책과
6. 의견제출 : 2010. 11. 9일까지 정선군 녹색정책과로 토지수용에 관한 의견 제출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95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 123)

정선군공고 제2010-62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입안·열람공고

강원도고시 제2007-235호(2007.11.02)로 결정된 정선읍 신월리 정선국도관리사무소 구역확장에 따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열람 공고한 사항 중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29.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국도관리사무소 구역확장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2.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가.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981번지 일원
   나.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기정) 28,616㎡ ⇨ 변경) 36,593㎡ (증 7,977㎡)
   보전관리지역 기정) - ⇨ 변경) 4,399㎡ (증 4,399㎡)
   농림지역 기정) 12,376㎡ ⇨ 변경) - (감12,376㎡)
   ○ 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 공공청사 기정) 28,616㎡ ⇨ 변경) 35,672㎡ (증 7,056㎡)
   -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60%이하, 높이 4층이하
3.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4.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10.10.29. ~ 2010.11.11까지)**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 기간내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서면제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건설도시과(☎560-2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 공람·열람공고 열람자 의견서

공 람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10. . .
공 람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람 의 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공고한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공고 제2010-632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0. 30.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현재 재단의 이사장을 "군수"에서 "군수가 임면 한다"로 변경하고, 상근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이사장"을 폐지함으로써,
   ○ 재단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문화마인드가 있는 전문가를 등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재단 발전과 정선아리랑 진흥 및 가치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를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로 개정 (안 제7조제2항)
   ○ "부이사장"을 폐지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4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문화예술담당 (우편번호 233-804)
- F A X 제출 : 033-560-2593, 문의전화 : 033-560-2548

붙임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을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 한다.

제7조제4항 중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호 “군수”를 “이사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 중 “부이사장”를 “이사장”으로 한다